


퍼스트유정기적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분	내용						
상품명	• 퍼스트유정기적금						
가입대상	• 개인고객 중 다올저축은행 첫 가입 고객 (1972년도 설립 이후 고객등록을 처음으로 하는 고객)						
가입금액	• 1만원 이상 ~ 20만원 이하 (정액적립식)						
가입기간	• 12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(월단위)						
가입채널	• 영업점						
가입조건	• 1인 1계좌 •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필수 (미성년자 제외)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일시지급식						
예금자 보호여부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
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						
이자율 (22.03.21 현재)	기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<table border="1"> <tr> <td>(연,세전) 기본이율</td> <td>12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3.00%</td> </tr> </table>	(연,세전) 기본이율	12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3.00%			
	(연,세전) 기본이율	12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3.00%					
만기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> <tr> <td colspan="2">경과기간 이율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이내</td> <td>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연0.1%</td> </tr> </table>	경과기간 이율		1개월 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연0.1%
경과기간 이율							
1개월 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					
1개월 초과	연0.1%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	• 이자계산식 = 월납입금 × {계약월수 × (계약월수+1)/2 × 이율/12}						
만기 앞당김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기 앞당김 이율 : 약정이율+1.5% •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,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 만기앞당김 이자를 만기 지급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 						
원천징수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						

구 분	내 용												
중도해지 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을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예치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미만</td> <td>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</td> </tr> <tr> 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50%</td> </tr> <tr> <td>6개월이상 ~ 9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55%</td> </tr> <tr> <td>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60%</td> </tr> <tr> <td>12개월이상</td> <td>기본이율 × 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예치기간	이 율	1개월미만	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	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12개월이상	기본이율 × 70%
	예치기간	이 율											
	1개월미만	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											
	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										
	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										
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											
12개월이상	기본이율 × 70%												
입금지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금지연이율 : 약정이율+1.5%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 <p>① 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365 × 입금지연이율 ×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계약월수</p>						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								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								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												
만기해지 사전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해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- 납입 연체일수가 있는 정기적금의 자동해지는 만기이연일에 처리 - 전화차 불입이 완료된 계좌에 한하여 처리 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 												
연계·제휴 서비스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												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
예 아니오 “중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② 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